

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3월 23일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3월 23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29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-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(2026. 4. 3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정철영 수산정책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포항시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배후부지(장기면 금곡리 178번지 일원) 내 연어양식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의 조기확보 및 효율적인 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사업* 대상지로 1단계구역('24. 9.) 및 2단계 구역('26. 3.)이 각각 선정됨.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「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」 제5조(협약체결) 및 「포항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체결방법)에 따라 의무부담사항에 대한 포항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1조(목적) 공공토지비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목적 규정
- 제2조(비축대상토지) 비축사업 대상 토지의 범위 규정
- 제3조(협약의 유효기간) 업무협약의 유효기간 규정
- 제4조(보상업무의 범위) 협약기관별 업무의 범위 규정
 - (포항시) 국유지 관리전환 및 공유지 유·무상귀속 협의, 지장물 철거

- (LH)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
- 제5조(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및 부대비용 등의 부담)
 - 개발사업 관련 원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비용 및 부담금은 원사업시행자가 부담
- 제6조(잔여지의 매입), 제7조(잔여지 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)
 - 잔여지 매수 및 잔여지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
- 제8조(공익사업의 변경 등) 공익사업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 이행 사항
- 제9조(비축토지의 관리) 비축토지 현상을 유지·보전하여 원형지 상태 공급
- 제10조(비축토지의 공급) 공급가격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
- 제11조(비축토지의 사용)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에 사용함을 원칙
 - 공공토지 비축심의위원회에서 조기 설치 필요시 사용승낙 절차 이행
- 제12조(협조의무)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상호간 협조에 관한 사항
- 제13조(협약의 해석) 이의 및 견해가 다른 경우 상호 협의에 관한 사항
- 제14조(협약의 발효) 협약의 효력에 관한 사항

다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- 「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」 제5조(협약체결)
- 「포항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체결방법)

라. 비축사업 개요

- 사업명 : 연어양식특화단지 조성(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배후부지)
- 사업위치 : 포항시 남구 장기면 금곡리 일원
- 사업규모 : 부지면적 196,493㎡(약 5.9만평, 176필지)
- 사업비 : 168억원(용지보상비 기준)
- 비축방식 : 토지은행(LH) 선매입 후, 포항시 5년 분할상환(소유권 이전)
- 비축기간 : 2026. 10. ~ 2027. 10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장준호)

- 본 동의안은 포항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공공토지 비축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토지은행과 포항시 간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 협약 체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,

- 검토결과, 본 동의안의 의결을 통하여 포항 연어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배후부지 조성사업을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토지은행의 일괄 보상을 통해 보상 기간 단축 및 보상비 절감이 가능하고, 사업의 조기 착수가 가능하며, 포항시는 대금을 5년 이내 분할 납부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, 보상 관련 업무를 전담기관인 LH가 수행함에 따라 행정력 절감 효과도 기대되는 등 타당성이 인정되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